



공고 제2025-673호

2025년 「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 (디자인상용화)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「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3. 19.

경기도지사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

□ 지원내용

- **[디자인상용화]** 상용화 가능한 우수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금형제작 지원

□ 지원대상 [신청기업]

- **[디자인상용화]**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(22~24년) 제품디자인 수혜기업 중 제품 제작도면, Design Mock-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금형제작지원
 - ※ 디자인개발지원 제품디자인 지원받은 동일 과제에 대한 지원만 가능함 (일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제품은 동일과제로 인정)
 - ※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 신청가능

□ 신청제외 기업

-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(2개년 이상),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-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-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

□ **제작기업(금형제작업체)**

-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신청
 - ※ 과업 및 최종결과물,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, **최종선정 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**
- 국내소재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된 제작기업을 선정해야함
 - ex : 금형 제작,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필수**
 - ※ 경기도 소재 제작기업의 경우 가점우대
- ※ **제한사항**
 - 국외 소재 제작기업 (해외 제작업체 통한 진행 불가)
 -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제작기업을 선정할 수 없음
 -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기업이 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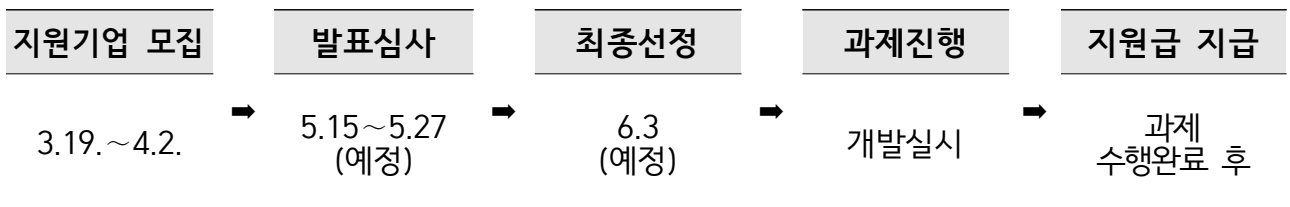
2 지원분야

□ **지원분야**

구 분	내 용	지원한도액	규모 (社)	기업 부담
디자인상용화 (금형)	· 제품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	최대 1,600만원 이내	4	30%

- ※ **최종 지원금액은 원가분석 의뢰 후 확정, 완료시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**
- 상용화(금형) 결과물 : 프레스 금형, 플라스틱 금형, 초경금형, 분말야금 금형, 다이캐스팅 금형, 단조금형, 압출금형 등

□ **지원절차**



- ※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- ▶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(발표심사) 상정
 - 개최일정 : 2025 5. 15(목) ~ 5. 27(화) 중, 비대면 심사 예정

□ 유의사항

- 명확한 과업내용 및 소요비용 확정
 -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%에서 지원가능
(B사 상용화(금형제작) 용역금액이 약22,9백만원(VAT제외) 일 때 16백만원 지원)
 -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및 원가분석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**조정 될 수 있음**
-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
-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부담.
원가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, 소요비용(VAT제외)의 70% 최대(16백만원)을 지원금액으로 결정
-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후, 지원금 지급
 - 결과보고서(금형,사출제품사진) 및 현장점검 실시
 -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필수
-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. 「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」 참고

3

신청방법

- **[접수기간] 2025. 3. 19.(수) ~ 2025. 4. 2.(수) 17시 까지**
- **[신청방법] 경기기업비서 (www.egbiz.or.kr)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**
 - ※ 사업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.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
 - ※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,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, 최종 신청(접수) 미완료 기업(신청서 작성중 등)은 불인정
 - ※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4

제출서류

필수서류	선택서류(해당 시 제출)
① 디자인상용화 신청서 (서식 1)	⑬ 경기도유망중소기업
② 디자인상용화 추진계획서 (서식 2)	⑭ 벤처기업
③ 시행내역서 (서식 3)	⑮ 경기일자리우수기업
④ 세부시행내역서 (서식 4)	⑯ 이노비즈
⑤ 외주가공비 예산계획서 (서식 5)	⑰ 수출유망중소기업
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(서식 6)	⑱ 사회적기업
⑦ 사업자등록증명원 (국세청)	⑲ 여성기업
⑧ 2023년 재무제표	⑳ ESG진단평가 우수기업
⑨ 국세 납세증명서	㉑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
⑩ 지방세 납세증명서	㉒ 산단 RE100 참여기업
⑪ 고용보험가입자명부	㉓ 산업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)
⑫ 중소기업확인서	

※ 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「디자인개발지원」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

5

문의처

○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동부권역센터	박정은 대리	031-830-8563
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관련 문의 (회원가입, 온라인 신청, 파일업로드 오류 등)
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(Tel. 031-259-6299)

6

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○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

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